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31
----------	-----

2025. 1. 24.(금)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최정훈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 2025년 1월 10일
- 다. 회부일자 : 2025년 1월 14일
- 라. 상정일자 : 2025년 1월 22일
 -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최정훈 의원)

가. 제안사유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시 확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사업 위탁 시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신복순)

-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충북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정책 개발, 민간 교류사업, 교육 및 출판사업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는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음.
-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

며, 이를 충청북도의 정책과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이 타당함.

- 특히, 민간 위탁을 통해 충청도 내 다양한 단체가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통일 준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평화통일 기반조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충청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4. 질 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